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0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승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2.
3. 회부연월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재혼 이후의 유족연금액은 재혼 전 지급받던 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생략)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40조의2(재혼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특례) ① 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u>

	<u>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의 유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① 부상·질병의 경우 요양급여 및 재활급여, ② 장해의 경우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③ 사망(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포함)의 경우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공무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사망이나 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등의 부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보상수준								
부상 질병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실비지급								
	재활 급여	재활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특정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을 한 경우	인사처장 고시 범위 내 실비 (최대 3개월, 월 10만원 내)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한 경우(사전 승인 필요)	인사처장 고시 범위 내 실비 (최대 10회, 1회당 10만원 내)								
장해	장해 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5년분의 장해연금액 일시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택일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 준용에 따른 고용부 고시 금액(단위 : 원/일) <table><tr><td>구 분</td><td>상시</td><td>수시</td></tr><tr><td>전문간병인</td><td>53,060</td><td>35,370</td></tr><tr><td>가족·기타간병인</td><td>46,250</td><td>30,830</td></tr></table>	구 분	상시	수시	전문간병인	53,060	35,370	가족·기타간병인	46,250
구 분	상시	수시										
전문간병인	53,060	35,370										
가족·기타간병인	46,250	30,830										
사망	재해 유족 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액의 60%								
		순직 유족 급여	순직 유족연금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유족가산)							
			순직 유족보상금	-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유족가산)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 작전 수행,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부조 급여	재난부조금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사망한 경우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자료: 인사혁신처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이 중 재해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①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재해유족연금”이라 함)과 ②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 있고, 지급대상인 유족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및 손자녀, 조부모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한편, 재해유족연금은 수급권의 존속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때,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또는 자녀·손자녀가 25세에 도달한 때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고,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유족에게 이전됨.²⁾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재해유족연금 수급 범위 및 순위》

- ☐ 유족의 범위(제3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구분	내 용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사실혼 포함)
자녀	25세 미만자 또는 25세 이상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퇴직 후 출생·입양 자녀는 제외, 퇴직 당시 태아는 자녀로 간주)
손자녀	자녀와 기본 요건은 동일 단, 아버지가 없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
부모· 조부모	퇴직 후 입양된 경우는 제외

- ☐ 유족순위(제11조) : 민법상 상속 순위³⁾에 따르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균분 지급
* (최근친) 직계비속 & 배우자 → (최근친) 직계존속 & 배우자
- ☐ 수급권 상실 및 이전(제40조) : 사망, 재혼, 친족관계 종료, 25세 도달(자녀, 손자녀) 등 해당시 동순위자 → 차순위자 순으로 권리 이전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배우자가 재혼하면 재해유족연금 수급권이 전부 소멸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

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수급자와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배우자였던 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재혼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⁴⁾ 이와 비교할 때, 재혼을 이유로 재해유족연금 수급권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은 다른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에 대하여 배우자의 재혼을 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2022. 8. 31. 2019헌가31)는 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어 사적 부양이 가능해질 수 있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4)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반면, 반대의견(재판관 4인)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공무원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공무원의 근무와 연금형성에 기여하였고, 실질적으로 기여금의 부담에도 공동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단순히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수혜적 성격의 급여로만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또한 재혼을 수급권 상실사유로 두지 않는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개정안은 재해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재혼 전에 지급받던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해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일정한 보상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논리적 전제에 기초하여,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재해유족연금과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은 급여의 발생 원인과 산정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해당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연금형성 기여를 정산하는 성격이 강함.

반면, 재해유족연금은 혼인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공무원 등이 사망할 당시 법률상 유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이 발생하고, 급여액 산정에도 혼인기간이나 배우자의 연금형성 기여가 직접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분할연금과 재해유족연금을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 보아 양자 간 형평성만을 근거로 수급권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재해유족연금의 생활보장·재해보상적 성격과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재혼을 일률적인 수급권 상실사유로 두기보다는 재혼 후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요건을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재해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기간 중 재산(연금)형성 기여를 반영하는 분할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고,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하여 생계지원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으로의 급여 이전이 제한되어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